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
----------	-----

제출년월일 : 2002. 1. 26.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지방세 제증명의 발급사무와 관련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업무를 지역여건상 읍·면·동에서도 발급토록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 발급 1건 신설

과주시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과주시사무의읍·면·동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세무과 소관중 시세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납부서 교부란 다음에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 발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세 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발급		지방세법 제38조	읍·면·동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입 안 자	총 무 과 장	홍 덕 기
	시 정 담 당	백 철 현
	담 당 자	김 영 준

신 구 대 비 표

현				개				정		안
소 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소 관 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 임 기 관	
세무과	1.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세무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시세완납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지방세법 제38조	읍·면·동	